

제367회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1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1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1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1

(14시29분 개의)

○소위원장 조승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여는 소위입니다.

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송옥주 의원, 박경미 의원, 정병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심사 대상입

니다.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옥주 의원님 안과 정병국 의원님 안은 대체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내용 등인데요.

다른 점은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정병국 의원안에서는 초·중고 설립·경영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정병국 의원안에서는 환기설비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분담 주체에 대해서도 송옥주 의원안에서는 교육부장관하고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정병국 의원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님 안에서는 공기 질 점검을 실시할 때 학교운영위 위원이라든지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참관을 허용한다든지, 환경위생이라든지 식품위생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을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공기 질 등의 측정장비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등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송옥주 의원님 안과 정병국 의원님 안에서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다른 점은 조문 위치가 좀 다릅니다. 보고서 3쪽 비교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의원안에서는 법 3조 2항에 신설하고 있습니다마는 3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건실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법 4조에서는 학교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박경미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학교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 있는데,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5조가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 하위규정으로 보아 제6조를 신설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는 내용은 교육부도 그렇고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4쪽에 수정의견을 저희가 제시했는데 후단 부분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시’라고 해서 참관하는 내용을 좀 더 한정적으로 적용하였습시다마는 저희가 박경미 의원님 안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참고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6쪽입니다.

위생점검 및 측정장비 점검 신설입니다.

여기도 앞서 보고드린 대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6월 19일 시행 예정으로 5조가 돼 있기 때문에, 당초 발의하실 때는 그 내용이 없어서 5조로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문 체계상 공기의 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4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 내용입니다.

부칙을 보면 세 분이 다 각기 달리 규정하고 계십니다. 송옥주 의원은 3개월 경과, 박경미 의원님께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정병국 의원님은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볼 때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박경미 의원님께서 2조에 적용례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박경미 의원님 안이 적정하기 때문에 부칙 2조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관, 정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조문 정비라든지 자구 정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에, 또 내용상에 있어서도 그 의견에 전부 동의합니다.

다만 하나 정병국 의원님 안 중에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로 이렇게 재량의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수준을 알려 주는 센서가 이미 부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칫 다른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또 환기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굳이 각 교실마다 둘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샘플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에다 설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구 조정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 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나머지는 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지만 측정장치에 대해서는 이미 미세먼지 제거하는 공기청정기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그것도 중복설치할 우려가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전문위원 보고와 정부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차관님, 측정기가 돈이 얼마나 드나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1대 당 대개 100만 원~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는 리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현아 위원 측정기가요? 공기청정기 말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측정기는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몇천 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까지 여러 종

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는 불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계로 돼 있다기보다는 들고 다니는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 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에 돌아다니면서 측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아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까 공기청정기 안에 미세먼지 농도가 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그렇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가 누군가 취합해서 관리되고 기록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아닙니다.

○**김현아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가 법안심사 기간이 다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여는 교육위 법안소위인데 교육부는 너무 미온적이신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되게 여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고 또 중간에 이게 기록을 갖고 해서, 저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측정하는 것 갖고 우려하신다고 하면 지금 사안의 시급성을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에 측정기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교육부는 어느 수준에서 측정기를 학교한테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측정기만 다는 게 아니라 측정하고 나서 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걸 갖고 뭘 할 거냐라는 것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의 그런 대응에 저는 조금 놀랍니다.

○**교육부차관 박백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문구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전희경 위원** 차관님, 아까 문구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할 수 있다’로 바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니까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그 문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

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김현아 위원님 말씀 주신 것까지 받아 가지고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기정화설비의 가동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부령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록을 관리하라든지, 1항은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것 1항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2항에 측정장치는 교육부령에서 주기적으로 얼마마다 한다든지 또는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거기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전희경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차관님께서 송옥주 의원안과 정병국 의원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견이 없다 하시고 문안 정리를 얘기하셨는데 그 수정의견에 따르면 공기정화설비의 의무화 부분 등에 대해서 따로 문안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6조(공기정화설비 등 설치)에서 그 수정의견에는 ‘정병국 의원안 제3조 제2항의 내용과 같음’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6조를 1항과 2항으로 나눠서요, 1항은 ‘학교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고서 의무조항으로 하고요. 2항에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기정화설비의 가동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전희경 위원** 그러면 차관님 지금 말씀은 이게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정화설비를 의무화하는 것, 설치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김현아 위원님 말씀처럼 미세먼지 측정기도 역시 의무설치를 해서 심지어 그 데이터까지도 책임지고 추세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전희경 위원** 교육부에서 그런 의견이시면 여기 수정의견에 보태서 말씀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그 6조의 1항과 2항을 어떻게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문서로 주셔야 되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드리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그다음에 문서로 주심에 있어서 송옥주 의원안, 정병국 의원안은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여기 내용을 보면 송옥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환기설비도 의무로 갖추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화기만 의무로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조항으로 바꾸는 거니까 이 두 의원님의 안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교육부의 의견 주신 게. 그러면 그걸 토대로 얘기하는 게 오늘 이 법안 통과 의 코어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조금 더 설명 말씀을 드리면 공기정화, 그러니까 에어컨 비슷하게 생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천장을 통해서 순환 기계설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학교는 요즘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기계식으로 돼 있는 순환설비와 정화설비가 갖춰진 곳들은 모든 교실에 이게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별실도 있고요 안 쓰는 교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장치는 해 둡니다. 그러나 그걸 안 쓰게 되면 거기를 닫아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전부 다 이 측정장치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쓰는 교실에만 측정장치를 둘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일단은 시설은 다 갖춰 놓은 다음에 그 측정장치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렇게 측정장치는 조금 여유를 두자는 말씀입니다.

○**곽상도 위원** 차관님, 교육부 입장이 정확하게 됩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설치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교육부장관의 생각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부 입장이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설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휴대장비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곽상도 위원** 아니, 반대로 장비가 그런 상황이면 설치를 이동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교육부 입장이 정확하게 뭐냐고요. 설치하자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하자는 겁니다.

○**곽상도 위원** 그러면 토 달 이유가 없네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하겠다는 얘기인데……

○**곽상도 위원** 아니, 하겠다는 것이면 그냥 사족 없이 가면 되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처음 보낼 때……

○**곽상도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교육부 입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족을 달 필요 없이 하면 되잖아요. 현실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장치가 개발이 돼서 공기정화설비하고 같이 믹스가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공기정화설비하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동시에 설치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 것을 왜 자꾸 안 할 수 있는 여지나 규정을 만들어서 빠져나가려고 그러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죄송합니다.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에어컨식으로 캐비닛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측정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문제없고요. 그다음에 순환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효율성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박찬대 위원**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지금 1항, 2항으로 나누어서 1항은 설치하여야 한다, 2항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환기설비,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단서로 ‘만약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공기정화설비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중복 설치 때문에 지금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김현아 위원** 그것 하나에 몇만 원밖에 안 돼요.

○**박찬대 위원** 몇만 원밖에 안 한다고요?

○**김현아 위원** 솔직히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김현아 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 있는데요.

아까 정병국 의원하고 송옥주 의원님하고 차이 얘기하시면서 학교의 장이나 경영자나 설립자나 라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부 안에서는 유치원이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유치원 포함입니다.

○**김현아 위원** 유치원 포함이에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김현아 위원** 그러면 최종 문구는 뭘로 가는 거예요? 학교장이예요, 아니면……

○**교육부차관 박백범** 나누어 드린 문구에 있는 것처럼 ‘학교’ 해 놓고 괄호 열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학교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갑니다.

○**김현아 위원** 알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전희경 위원** 차관님 설명하고 교육부에서 주신 안의 문구하고는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6조 2항 보세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기정화설비의 가동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게 지금 공기청정기 설치했는데 이것 먹통인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 보자는 미세 먼지 측정기가 아니거든요. 진짜로 실질적인 공기상태하고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하자는 건데 공기정화설비의 가동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아니 불 들어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추가 조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위원님, 제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에어컨형으로 되어 있는 교실마다 개별적으로 설치된 공기정화기를……

○**소위원장 조승래** 차관님, 지금 세세한 공기측정기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다 상정하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공기청정기를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원칙적으로 청정기와 측정기를 설치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다음에 우리가 그 관련된 지침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측정기가 부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휴대형 측정기로 측정상태를 계속 점검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갈음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기본적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시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종 지침을 통해서 일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쟁점은 없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없습니다.

○**전희경 위원** 간사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관님!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전희경 위원** 아니, 왜 간사님이 정리해 주실 때는 그렇게 철석같이 정리가 되시고 저희가 지금 세 명이나 법안 심사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소위원장 조승래** 아니, 제가 의견을 들어서 조정안을 냈잖아요.

○**전희경 위원** 아니, 진짜 왜 이러시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끝내려고 그러니다.

○**전희경 위원** 저희가 측정기도 의무화하자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도 힘이 덜 드시잖아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어차피 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 측하고 전문위원님, 지금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또 정리할 게 뭐 있나요?

○**전문위원 조기열** 학교의 장하고……

○**소위원장 조승래** 부칙은 3개월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기열** 학교의 장하고 설립·경영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학교의 장과 경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사실은 모든 책임과 의무는 일단 학교의 장이 지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그 재원을 경영자나 설립자나 교육청이나 국가나 어디서 받아 오든 결국은 학교의 장에게 책임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겠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학교의 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사립을 다 포괄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또 뭐가 있나요, 없습니까?

○박찬대 위원 환기설비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빠졌잖아요?

○소위원장 조승래 환기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의무 설치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정화장치에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박백범 공기정화설비라는 말에 다 들어갑니다.

○박찬대 위원 오케이.

○소위원장 조승래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쟁점이 없지요?

○교육부차관 박백범 예.

○소위원장 조승래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다 자구 정리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조기열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안 해도 되지요, 우리는? 그러면 14일 날 오후 2시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백범 차관님 등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곽상도	김현아	박경미	박용진
박찬대	임재훈	전희경	조승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조기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차관	관	박	백	범
기획조정실장		주	명	현